

학생생활관 운영 규정

전문제정 2019.04.17., 개정 2019.12.23., 개정 2020.08.12., 개정 2022.03.04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 있는 공동생활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혜전대학교 학생생활관(이하 “생활관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2조 (적용범위)

생활관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운영)

생활관은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관장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 (이용)

생활관 시설은 사생만이 이용할 수 있다. 단, 학생생활관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생 이외인에게도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5조 (사생 수칙 등)

관장은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 수칙을 정한다.

제2장 조 직

제6조 (조직)

학생생활관은 관장, 팀장, 사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7조 (직무)

- ① 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<개정 2020.08.12.>
- ② 관장 이하의 직원은 관장을 보좌하며, 생활관의 관리운영 및 사생 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.

제8조 (실무회의)

실무회의는 관장과 직원으로 구성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생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.

- ① 사생퇴사
- ② 건의 사항
-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 (자치회의)

생활관 운영에 사생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키며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회의를 둘 수 있다.

제10조 (관리)

학생생활관의 일반사무 및 사생들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직원 및 사감이 담당하고, 경리,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 3 장 입사 및 퇴사

제11조 (입사자격)

본 대학 재학생 및 교포, 교환학생, 어학연수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우선한다.

제12조 (입사허가)

입사허가는 매학기 초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 한다. 허가 만료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10일 전에 그 뜻을 서면(퇴사원서)으로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2.23.>

제13조 (입사자격의 제한)

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.

-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.
- ②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자진 퇴사자.
- ③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.
- ④ 휴학 중인 자.
- ⑤ 기타 실무회의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.

제14조 (사생선발)

- ① 학생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된 사생 선발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입사 신청을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- ② 관장은 입사신청서를 심사한 후 입사 생을 선발 공고한다.

③ 사생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(1) 학년별 선발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(2) 선발기준 <개정 2020.08.12.>

가. 신입생 : 원거리 통학 학생(통학버스 운영 제외 지역 우선 선발, 운영지역은 통학버스 탑승지 부터 집까지의 원거리 우선 선발)

나. 재학생 : 1차-원거리 통학 학생 (우선순위는 신입생과 동일)
2차-직전학기 별점이 낮은 학생

다. 학생생활관 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추가 공고 후 1, 2호에 의거 선발한다.
<개정 2022.03.04.>

라. (감점조치)관장은 입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조건에 미비한 신청자들에게 생활관 생활기록부 10점까지 감점 조치할 수 있다.

마.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가구 등 사회적 배려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.(증빙서류 제출 시)

제15조 (입사등록)

① 입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입사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입사 서약서 및 등록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입사금액

입사일기준 잔여숙박일수로 계산한다.<개정 2019.12.23.>

제16조 (퇴사구분)<신설 2020.08.12.>

① 퇴사는 정규퇴사, 중도퇴사와 강제퇴사로 구분한다.

② 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퇴사 할 수 없다. 다만 군 입대, 휴학, 제적,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, 기타 사유에 의해 관장이 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7조(정규퇴사) 정규퇴사는 각 호에 해당한다.<신설 2020.08.12.>

① 입사기간 종료 후, 원칙에 준하여 정규 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

② 입사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잔여일수 3주이하인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

제18조(중도퇴사) 중도에 퇴사해야 하는 공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사 희망일 7일 이내에 중도퇴사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감의 허가를 받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한다.<신설 2020.08.12.>

① 군입대 : 군입대 영장 사본

② 휴학/자퇴 : 휴학증명서/자퇴확인서

③ 질병 : 진단서

④ 제 적 : 제적증명서

⑤ 기타 :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유 기재

제19조 (강제퇴사)<조 옮김 2020.08.12. 제16조→제19조><개정 2020.08.12.>

사생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실무회의에서 퇴사시킬 수 있다.

- ① 사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.
- ② 학생생활관 납부금 미납자. <개정 2022.03.04.>
- ③ 등록금 미등록자.
- ④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.
- ⑤ 법정 전염병 감염자 및 보균자.
- ⑥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.

제4장 재 정

제20조 (경비부담)<조 옮김 2020.08.12 제18조→제20조>

학생생활관은 시설비,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21조 (납부금)<조 옮김 2020.08.12. 제19조→제21조><개정 2020.08.12.>

사생이 납부할 생활관비, 보증금 및 식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2조 (납기)<조 옮김 2020.08.12. 제20조→제22조><개정 2020.08.12.>

납부금은 매학기 또는 1년 1회로 한다. (생활관비, 보증금, 식비)

제23조 (퇴사신고)<조 옮김 2020.08.12 제17조→제23조>

사생이 퇴사 할 때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감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관장에게 퇴사 보고 후 퇴사한다.

① 환불금액

- (1) 납입된 납부금은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으며, 공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9.12.23.><개정 2020.08.12.>
- (2) 중도퇴사자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 후 생활관 퇴사 희망일에 맞춰 잔여 일수에 대한 생활관비 잔액을 반환 받는다.<개정2019.12.23.><개정 2020.08.12.>
- (3) 강제퇴사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20.08.12.>

제24조 (회계 연도)<조 옮김 2020.08.12 제21조→제24조>

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25조 (예산결산)<조 옮김 2020.08.12 제22조→제25조>

학생생활관팀장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결산보고를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26조 (사용료)<조 옮김 2020.08.12 제23조→제26조>

학기외에 사용하는 학생생활관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3.04.>

부 칙(2019.04.17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

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었던 기숙사(생활관) 내부운영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일 부터 폐지한다.

부 칙(2019.12.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8.1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